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204496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502731 판결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취하하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해서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은 ‘B’로, ‘피고 회사’는 ‘A’으로, ‘피고 C’는 ‘피고’로 각 고친다. 이하 같다).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제1심판결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N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되어 배당표가 작성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2738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가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21행부터 제8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4행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15행부터 제11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을다 제9, 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여하였다는 50,000,000원이 피고 및 O의 이름으로 B의 계좌로 입금된 2019. 8. 28. 이후로서, 2019. 8. 28. 17,000,000원, 2019. 8. 29. 10,000,000원, 2019. 8. 30. 5,000,000원, 2019. 9. 2. 3,000,000원, 2019. 9. 5. 2,000,000원, 2019. 9. 9. 1,000,000원, 2019. 9. 16. 1,000,00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이 B의 계좌에서 A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다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다 제16호증의 기재(B의 진술)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자금유통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은 2019. 8. 27. 대표자 등에 대한 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8. 28. A에 대해 신용보증부실 처리를 하였다.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인 2019. 8. 28.이고, B이 위 돈을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신용회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입금된 돈 중 일부가 A의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위 대여 및 매매예약 이후에 A의 신규 매출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곧바로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③ 또한 위 3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B의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 변제로 인출되었다.

④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A의 법인자금 유통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월 2%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피고로부터 B의 이름으로 차용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이 B이 A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에 2019.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변경에 따라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

별지

## 목    록

1. 서울 강북구 K 도로 17㎡
2. 서울 강북구 L 대 76㎡
3. 서울 강북구 L

[도로명주소] 서울 강북구 M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40.07㎡

부속 세멘부목크조평옥개

평가건 물치 3.77㎡, 끝.

